

제281회대구광역시의회(임시회)

본회의회의록 제1차(부록)

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

목 차

1. 제281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회부현황.....	1면
2.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.....	13면
3. 시장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.....	14면

제281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회부현황

■ 제281회 임시회 집회

- 집회요구 : 황순자 의원 외 10인
- 집회공고 : 2021. 3. 10 (수)
- 집회일시 : 2021. 3. 16 (화) 10:00

■ 회부안건 총괄

구 분	계	공 통 (교육위제외)	기획행정	문화복지	경제환경	건설교통	교 육
건 수	28	2	4	5	5	9	3

※ 의원 18(재정수반 10), 시장 7, 교육감 1, 청원 2

회부안건 목록

○ 공 통 : 2건

-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

시장 (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)	○ 예 산 액 : 9,652,160 백만원 ○ 기 정 액 : 9,389,700 백만원 ○ 증 감 액 : 262,460 백만원
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-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시장 (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)	○ 운 용 액 : 1,038,918 백만원 ○ 전년도운용액 : 919,689 백만원 ○ 증 감 액 : 119,229 백만원
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○ 기획행정위원회 : 4건

-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예산)

김지만 의원 대표발의 (자치행정국 회계과)	○ 제안이유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, 청년 친화적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소재 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의 경감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계규정을 정비 ○ 주요내용 -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의 감경 범위를 확대 -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의 납부방법을 개선 -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- 「코로나19」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

<p>시장 기획조정실 (세정담당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코로나19」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세(시세)를 감면하여 공익 및 방역을 위해 필수적인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의 납세부담 경감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면세목 : 취득세(취득가액의 2%) - 감면대상 :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2020. 2. 18. 이후 「코로나19」 방역을 위해 설치한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- 감면추계액 : 12백만원 정도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-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<p>시장 자치행정국 (회계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구광역시 2021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상가 기부채납 ※ 2020년 7월 31일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(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)에 포함된 계획이며, 기부채납 건물의 규모가 2021년 1월에 확정되어 관련상가(14,971㎡)만 별도 요청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- 「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2·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

<p>청원인 김태일 (소개: 김동식 의원) (소방안전본부 시민안전테마파크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원요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관련 조례명칭에 ‘2·18 기념공원’을 함께 병기하여 전테마파크의 건립의미와 유족들의 바람을 세우고자 함
---	---

○ 문화복지위원회 : 5건

–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예산)

배지숙 의원 대표발의 시민건강국 (건강증진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도시철도 출입구와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,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류소,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와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,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,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규정 - 상위법 등 관계법령 인용 조항의 오기를 바로잡아 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–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홍인표 의원 대표발의 여성청소년교육국 (청소년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 -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소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 -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정비 - 소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-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규정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–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(예산)

이영애 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예술정책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체육관광부(국어정책과)의 「한국수화언어법」에 근거하여 기존 「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하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기여 - 청각·언어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수어를 사회의 보편적 언어로서 격상시켜 삶의 질 향상 도모
--	-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주요내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- 「한국수화언어법」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발전시행계획 수립·시행- 한국수화언어발전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-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, 수어통역지원, 홍보, 기념행사 등 추진-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, 협력 체계, 포상 등을 규정
--	---

－ 『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』 민간위탁(신규) 동의안

시장 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예술정책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제안이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2021년 9월 개관하는 「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」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 있는 민간기관(단체)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함○ 주요내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위탁범위 :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관리·운영- 위탁기간 : 2021. 6. 1. ~ 2024. 5. 31.(3년)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－ 「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」 개정 청원

청원인 조광현 (소개: 이영애 의원) (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청원요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문화기반시설로 지역의 역사·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관인 박물관의 진흥을 위해 ‘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’를 개정해줄 것을 청원함.
---	---

○ **경제환경위원회 : 5건(철회 후 재접수 1건)**

-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(예산)

<p>황순자 의원 대표발의 (경제산업 분석담당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제교육지원법」에 따라 시민들이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,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 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례제정의 목적 - 경제교육 기본계획 - 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- 경제교육인력양성
---	--

-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(철회 후 재접수)

<p>홍인표 의원 대표발의 경제국 (농산유통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례제정의 목적 - 도매시장 법인에 관한 사항 -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 관한 사항 - 시장도매인에 관한 사항 -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에 관한 사항 - 매매 및 대금결제 등 - 도매시장관리 운영위원회 등 - 시장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
--	--

-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(예산)

<p>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일자리투자국 (일자리노동정책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,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례제정의 목적 - 이동노동자 복지증진 사업 -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·운영 -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--	--

- 『메디시티대구 K-의료특구』 계획(안) 의견제시의 건

<p>시장 혁신성장국 (의료산업기반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구시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관련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을 의료특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글로벌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의료관광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『메디시티대구 K-의료특구』 계획(안)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구광역시 중구와 수성구에 집적화되어 있는 병·의원 및 의료관광 관련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○ 건설교통위원회 : 9건

-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p>박갑상 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창조국 (도시계획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의 규제 개선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고,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개발사업계획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개선하고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추진 시 발생할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 -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사전자문 등 계획조정기능 강화 - 여건변화 반영 등
---	--

-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(예산)

<p>황순자 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창조국 (도시계획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의 안정성, 공정성, 등을 담보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 등 조례 목적 -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, 협상대상지, 민간, 공공기여 등의 용어 정의 및 대구광역시장의 책무 - 민간측·공공측 협상단 등 협상조직에 관한 사항 -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, 협상대상지 선정, 사업제안서 제출 및 협상의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- 기본구상안 공모, 협상,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
---	-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정평가 시행, 협상결과 통보,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, 도시관리계획 결정, 협상결과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 -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, 공공기여 산정기준, 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한 사항
--	---

-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p>전경원 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창조국 (도시디자인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경관심의에서 제외해오던 공동주택 중 신천 등 주요 경관거점의 인근에 위치하거나 시각적 영향이 큰 고층 및 대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,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1층 이상이거나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과 신천변 100미터 이내 및 금호강변 200미터 이내에 접하는 12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심의대상에 포함 - 현행 조례의 잘못 표기된 사항을 바로잡는 등 정비
--	--

-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예산)

<p>홍인표 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창조국 (건축주택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장기적인 정책의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, 전문가 자문과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제도가 실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내용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-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, 이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- 녹색건축물 조성계획, 에너지 소비 총량의 설정, 시범사업의 추진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-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공적이 큰 기관이나 단체,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규정
---	--

-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(예산)

<p>황순자 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창조국 (건축주택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주택법」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며,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- 공동주택 개별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점검에 있어 동별 2세대 이상, 면적 유형별 2세대 이상을 점검 -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품질점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및 품질점검의 공이 큰 시공자, 감리자, 기관·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명시 -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설치 기준 관련 조항을 정비
---	--

-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예산)

<p>하병문 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창조국 (건축주택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통안전시설 등 각종 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,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주택의 도로, 주차장 등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,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·보수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포함
---	---

-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p>김원규 의원 대표발의 교통국 (교통정책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개인형이동수단에 대한 공유문화 확산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공유자전거의 운영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민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사업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 - 이용자 안전을 위해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
--	-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에 대하여 규정 -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14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규정 - 대여사업자의 자전거이용시설 이용에 대하여 규정 -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하여 규정 - 재정지원 대상을 공공기관, 민간기업, 학교 등 시범기관으로 규정
--	---

-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p>강민구 의원 대표발의 교통국 (교통정책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수자원봉사자의 인정 및 보상체계 마련으로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일 1회 4시간 이내 등의 주차규제를 삭제하여 주차요금면제 혜택을 확대
--	---

- 『기술창조발전소』 민간위탁(신규) 동의안

<p>시장 도시재창조국 (도시재생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1년 5월 준공 예정인 「기술창조발전소」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, 경제적·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 있는 민간기관(단체)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함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탁범위 : 기술창조발전소 운영 전반 - 위탁기간 : 2021. 6. 1. ~ 2024. 5. 31.(3년) - 위탁방법 : 수의계약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○ 교육위원회 : 3건

-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예산)

<p>박우근 의원 대표발의 교육국 (체육보건과)</p>	<p>○ 제안이유 - 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실내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,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</p> <p>○ 주요내용 -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, 측정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설비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</p> <p>- 교육감이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</p>
--	--

-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p>이진련 의원 대표발의 행정국 (회계정보과)</p>	<p>○ 제안이유 -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경비가 지원됨에 따라 대구 지역 우수인재 육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장학금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</p> <p>○ 주요내용 - “학생”의 정의를 지원대상으로 개정하고, 지원대상에 대구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「고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추가</p>
--	--

-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p>교육감 (감사관)</p>	<p>○ 제안이유 -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</p> <p>○ 주요내용 -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</p> <p>-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처리 및 사실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간사를 감사관에서 공직윤리업무담당사무관으로 직위 변경</p>
----------------------	---

❖ 위원회 계류안건 : 8건

-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<기행(심사유보)>
-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<기행(심사유보)>
-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<기행(상정유보)>
- 대구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<문복(상정유보)>
- 대구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<기행(상정유보)>
-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<교육(상정유보)>
-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이문화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<교육(상정유보)>
- 대구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보급 및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<교육(상정유보)>

의안 번호	5941
----------	------

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(안)

연번	성 명	현 직	비 고
1	윤 기 배	시 의 원 (예산결산특별위원회)	
2	황 순 자	시 의 원 (예산결산특별위원회)	
3	강 성 환	시 의 원 (예산결산특별위원회)	
4	조 재 호	공인회계사 (미성회계법인)	
5	최 희 진	공인회계사 (영남이공대학교)	
6	안 중 동	세 무 사 (세무사안중동사무소)	
7	김 성 원	세 무 사 (성원 TAX)	
8	김 병 곤	재무경력자	
9	이 원 재	재무경력자	
10	양 병 춘	재무경력자	

수 신 : 대구광역시의회의장

제 목 : 시장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위의 요구안을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의회
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: 시장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1부.

2021년 3월 일

발의 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임태상 (인)

(찬성의원 서명부 별첨)

찬성의원 서명(날인)부

- 시장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-

의원명	서명 또는 날인	비고
임태상		
배지숙		
하병문		
강성환		
강민구		
황순자		
안경은		

시장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의안 번호	593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3. .

발 의 자 : 임태상 의원
(외 찬성의원 6인)

1. 주 문

-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2021년 3월 17일 하루, 시장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함.

2. 제안이유

- 제2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시장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
- 「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」 제73조

시장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 및 「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」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「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」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.

1. 출 석 일 시 : 2021. 3. 17.(수) 14:00

※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출석일은 변경된 의사일정을 따름

2. 출 석 장 소 :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장

3. 출석대상자 : 대구광역시장·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

4. 출석요구이유 :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